

제26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년 11월 29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19-98
- 나. 제 안 자 : 이충숙 의원 외 8명
- 다. 제안일자 : 2019년 11월 22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8일

2. 개정이유

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1일에서 6월 8일로 변경 (안 제4조)
- 나.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 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입법예고(2019.11.22.~11.27.)결과 : “의견 없음”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본 개정안은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[안 제4조제1호]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8일로 변경
- 2) [안 제4조제2호]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5일로 변경

다. 종합 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·결산의 심의를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려 하는 것으로,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됨

□ 지방자치법

제44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·6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